

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1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8. 28.

발의자 : 전현희 · 신창현 · 김철민

박광온 · 기동민 · 조정식

임종성 · 권칠승 · 심재권

이후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려운 한자어인 “축종”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“가축종류”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 보장을 하고,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4조 등).

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축종별”을 “가축종류별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중 “축종별”을 “가축종류별”로 한다.

법률 제16234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6

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“축종별”을 “가축종류별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축종별”을 “가축종류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대상)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열화사업자는 계약 생산 사육 마릿수 등을 기준으로 <u>축종별</u> 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로 한다.	제3조(적용대상) ----- ----- ----- -- <u>가축종류별</u> ----- -----.
제4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생 략)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(생 략) 2. 계열화사업의 <u>축종별</u>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. ~ 7. (생 략) ③ · ④ (생 략)	제4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가축종류별</u> --- ----- 3. ~ 7. (현행과 같음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6234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(계약사육농가협의회) ① ~ ⑤ (생 략) ⑥ 농가협의회는 <u>축종별</u> 중앙계약사육농가협의회(이하 “중앙농가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. 1. ~ 2. (생 략)	법률 제16234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(계약사육농가협의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<u>가축종류별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1. ~ 2. (현행과 같음)

<p>⑦ (생 략)</p> <p>제16조(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 위원회 설치) ① (생 략)</p> <p>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<u>축종별</u>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	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 위원회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가축종류</u> <u>별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-	--